상계장암지구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인터넷 청약 및 유의사항 등

■ 청약 신청은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고령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하신 분은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 ·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 신청접수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청약접수 전에 과거 당첨 사실 또는 주택소유 여부 등** 본인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며 계약체결 시에 제출 서류와 대조하여 신청 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세대원, 거주지, 무주택기간, 과거 당첨사실, 주민등록번호, 노부모부양 여부 및 조건 등)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신문 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대상자이며, 그 외 거주자는 수도권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시간**

인터넷 청약 시간은 오전8:00부터 오후5:30까지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청약 신청을 완료(신청완료 기준)하여야 함.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청약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청약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계약 시 서류제출**

인터넷 신청에 의해 당첨된 자는 '계약 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계약체결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 지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 거주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기재하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기재
- 거주개시일 :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전입일을 기재
- 전용85㎡이하 주택 청약 시 무주택세대주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 · 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인정기간을 감안하여 기재

※ 세대주기간은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차감한 전 · 후기간 등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

- 전용85㎡이하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수 : 전용85㎡초과 주택 가점항목의 부양가족 인정기준과 동일하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전용85㎡ 초과 주택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 기간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참조
- 전용85㎡ 초과 주택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참조
- 전용85㎡ 초과 주택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므로 기재 생략

■ 금회 공급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부적격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향후 일정기간(전용85㎡ 이하 주택 5년, 전용85㎡초과 주택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당첨이 제한(다만,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2011.3.31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 유예)되므로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 청약 체험을 권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당첨자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회 공급 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전용면적85㎡ 초과 주택(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하여 재당첨제한 기간 중이라도 청약 신청 가능함.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을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청약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청약 또는 청약자격 허위기재 등에 따른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다만, 신청 당일 신청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취소나 정정 시 예외)
- 당첨자 중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소명기간(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과 동시에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중 전산검색 결과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은 물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지된 내용과 신청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접수방법**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한 자
이용 대상	공 통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자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 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자 (다만,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경우	
이용 방법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 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신청자격 기준**

아래 신청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라 함은 세대주(본인)와 배우자,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07.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2)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 등 · 초본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무주택기간은 재산검색 결과에 의하여 확인함.

■ **기타 유의사항**

- 금회 공급물량은 철거 가옥주 등에게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남은 세대로서 일반분양(신혼부부 등 특별분양 포함)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공정이 80%를 초과하여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음.**
- 금회 공급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은 각 세대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를 일반동 층고만큼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 복도 ·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지하층 · 관리사무소 ·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리공사(1층)에서 직접 접수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함.
- 분양대상 표에서 해당 평면 최고 층수는 해당 평면 유형의 해당동 최상층 층수를 표시한 것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이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계단실형 및 복도식의 세대조합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다만,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에 되돌려 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복 청약 및 당첨 시 처리 기준**

○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포함) 주택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중복 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 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

- 일반공급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무효 및 계약 불가

○ **일반공급**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 불가(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전용85㎡이하 주택 : 동일세대(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전용85㎡이하 주택에 중복 청약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무효 처리
  - 전용85㎡초과 주택 : 동일세대(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 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다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두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을 비교하여 계약일자가 빠른 주택을 유효 처리함.
  - 동일세대(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계약(중복 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입력→ 조회 → 최근 당첨사실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주택공급 신청자는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이 재건축 · 재개발 등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주택조합 관할 시 · 군 · 구청에 반드시 확인할 것.

■ **투기자 처벌 및 재당첨제한 등 안내**

○ **투기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공급되는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일정기간(전용85㎡ 이하 주택 3년, 전용85㎡ 초과 주택 1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포함)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향후 일정기간(전용85㎡ 이하 주택 5년, 전용85㎡초과 주택 3년)동안 제1,2,3순위로 신청하여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만,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2011.3.31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 적용이 유예됨.

전용85㎡ 이하(국민) 주택

1단지 공급내역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5개층 4개동 분양아파트 227세대 중 1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모델 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세대별 공유 대지 면적(㎡)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신혼부부	국가유공	3자녀	장애인 등	일반공급 노부모 우선	일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81943-01	2009000265 (01)	59.500J	59B	59.500	19.360	78.860	26.350	(23.800)	105.210	47.030	51	15	3	2	5	5	21	109,111	15	'09.11월
81943-02	2009000265 (02)	84.690J	84A	84.690	27.200	111.890	37.450	(33.810)	149.340	66.920	80	-	4	2	8	8	58	103,104	15	
81943-03	2009000265 (03)	84.810J	84B	84.810	28.060	112.870	37.530	(33.880)	150.400	67.030	46	-	2	1	4	5	34	109,111	15	

■ 분양가격 (단위 : 천원)

주택형	평면 유형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09.8.15)	입주잔금 (입주시)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
59.500J	59B	1	109동 15층 1,4호 / 111동 15층 1,4호	187,154	18,715	18,715	89,724	60,000
		2	109동 11층~14층 1,4호 / 111동 11층~14층 1,4호	185,471	18,547	18,547	88,377	60,000
		3	109동 7층~10층 1,4호 / 111동 7층~10층 1,4호	183,789	18,378	18,379	87,032	60,000
		4	109동 6층 1,4호 / 111동 6층 1,4호	182,106	18,210	18,211	85,685	60,000
		5	109동 5층 1,4호 / 111동 5층 1,4호	180,423	18,042	18,042	84,339	60,000
		6	109동 4층 1,4호 / 111동 4층 1,4호	178,741	17,874	17,874	82,993	60,000
		7	109동 3층 1호 / 111동 3층 4호	177,058	17,705	17,706	81,647	60,000
		8	109동 3층 4호 / 111동 3층 1호	175,376	17,537	17,538	80,301	60,000
		9	109동 2층 1호 / 111동 2층 4호	173,693	17,369	17,369	78,955	60,000
		10	111동 1층 4호	172,011	17,201	17,201	77,609	60,000
84.690J	84A	1	103동 15층 1,2,3,4호 / 104동 15층 1,2,3,4호	270,932	27,093	27,093	136,746	80,000
		2	103동 11층~14층 1,2,3,4호 / 104동 11층~14층 1,2,3,4호	268,467	26,846	26,847	134,774	80,000
		3	103동 7층~10층 1,2,3,4호 / 104동 7층~10층 1,2,3,4호	266,001	26,600	26,600	132,801	80,000
		4	104동 6층 1,2,3,4호	263,536	26,353	26,354	130,829	80,000
		5	103동 6층 1,2,3,4호 / 104동 5층 1,2,3,4호	261,071	26,107	26,107	128,857	80,000
		6	103동 5층 1,2,3,4호 / 104동 4층 1,2,3,4호	258,606	25,860	25,861	126,885	80,000
		7	103동 4층 1,2,3,4호 / 104동 3층 1,2,4호	256,140	25,614	25,614	124,912	80,000
		8	103동 3층 1,2,3,4호 / 104동 3층 3호	253,675	25,367	25,368	122,940	80,000
		9	103동 2층 1,4호 / 104동 2층 4호	251,210	25,121	25,121	120,968	80,000
		10	104동 1층 1호 / 104동 2층 1,2호	248,745	24,874	24,875	118,996	80,000
		11	103동 1층 4호 / 104동 1층 4호	246,279	24,627	24,628	117,024	80,000
84.810J	84B	2	109동 15층 2,3호 / 111동15층2,3호	270,817	27,081	27,082	136,654	80,000
		3	109동 11층~14층 2,3호 / 111동 11층~14층 2,3호	268,331	26,833	26,833	134,665	80,000
		4	109동 7층~10층 2,3호 / 111동 7층~10층 2,3호	265,844	26,584	26,584	132,676	80,000
		5	109동 6층 2,3호 / 111동 6층 2,3호	263,357	26,335	26,336	130,686	80,000
		6	109동 5층 2,3호 / 111동 5층 2,3호	260,870	26,087	26,087	128,696	80,000
		7	109동 4층 2,3호 / 111동 4층 2,3호	258,383	25,838	25,838	126,707	80,000
		8	109동 3층 2,3호 / 111동 3층 2,3호	255,896	25,589	25,590	124,717	80,000
		9	109동 2층 2호	253,409	25,340	25,341	122,728	80,000
		10	109동 2층 3호 / 111동 2층 2,3호	250,922	25,092	25,092	120,738	80,000
		11	109동 1층 2,3호 / 111동 1층 2,3호	248,436	24,843	24,844	118,749	80,000

2단지 공급내역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5개층 7개동 분양아파트 298세대 중 1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모델 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평면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호당 공유 대지 면적(㎡)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신혼부부	국가유공	3자녀	장애인 등	일반공급 노부모 우선	일반	해당동	해당 평면 최고 층수	입주 기한
81944-01	2009000266(01)	59.900	59A	59.900	16.370	76.270	28.460	(25.950)	104.730	45.200	47	14	2	1	4	4	22	210	15	'09.11월
81944-02	2009000266(02)	59.500	59B	59.500	15.500	75.000	28.280	(25.790)	103.280	44.900	47	14	2	1	5	5	20	202,203	15	
81944-03	2009000266(03)	84.690	84A	84.690	21.710	106.400	40.250	(36.700)	146.650	63.900	33	-	2	1	3	3	24	208	14	
81944-04	2009000266(04)	84.810	84B	84.810	22.540	107.350	40.310	(36.760)	147.660	64.000	45	-	2	2	5	4	32	202,203	15	

■ 분양가격 (단위 : 천원)

주택형	평면 유형	구분 (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09.8.15)	입주잔금(입주시)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
59.900	59A	2	210동 15층 1,2호	180,601	18,060	18,060	84,481	60,000
		3	210동 11층~13층 1,2,3,4호,14층 1,2호	178,981	17,898	17,898	83,185	60,000
		4	210동 7~10층 1,2,3,4호	177,360	17,736	17,736	81,888	60,000
		5	210동 6층 1,2,3,4호	175,740	17,574	17,574	80,592	60,000
		6	210동 5층 1,2,3,4호	174,120	17,412	17,412	79,296	60,000
		7	210동 4층 1,2,3,4호	172,500	17,250	17,250	78,000	60,000
		8	210동 3층 1,4호	170,879	17,087	17,088	76,704	60,000
		9	210동 3층 2,3호	169,259	16,925	16,926	75,408	60,000
		10	210동 2층 1호	167,639	16,763	16,764	74,112	60,000
		11	210동 2층 4호	166,018	16,601	16,602	72,815	60,000
		12	210동 1층 1호	164,398	16,439	16,440	71,519	60,000
59.500	59B	1	202동 15층 1,4호	179,187	17,918	17,919	83,350	60,000
		2	202동 11층~14층 1,4호 / 203동 11층~13층 1,4호	177,594	17,759	17,759	82,076	60,000
		3	202동 7층~10층 1,4호 / 203동 7층~10층 1,4호	176,001	17,600	17,600	80,801	60,000
		4	202동 6층 1,4호 / 203동 6층 1,4호	174,407	17,440	17,441	79,526	60,000
		5	202동 5층 1,4호 / 203동 5층 1,4호	172,814	17,281	17,281	78,252	60,000
		6	202동 4층 1,4호 / 203동 4층 1,4호	171,221	17,122	17,122	76,977	60,000
		7	202동 3층 1호 / 203동 3층 1,4호	169,627	16,962	16,963	75,702	60,000
		8	202동 2층 1호 / 202동 3층 4호 / 203동 2층 1호	168,034	16,803	16,803	74,428	60,000
		9	203동 2층 4호	166,441	16,644	16,644	73,153	60,000
		10	202동 1층 1호 / 203동 1층 1호	164,848	16,484	16,485	71,879	60,000
84.690	84A	2	208동 11층~14층 1,2호 / 208동 11층~12층 3,4호	256,797	25,679	25,680	125,438	80,000
		3	208동7층~10층 1,2,3,4호	254,463	25,446	25,446	123,571	80,000
		4	208동 6층 1,2,3,4호	252,130	25,213	25,213	121,704	80,000
		5	208동 5층 1,2,3,4호	249,796	24,979	24,980	119,837	80,000
		6	208동 4층 1,2,3,4호	247,462	24,746	24,746	117,970	80,000
		7	208동 3층 1,4호	245,128	24,512	24,513	116,103	80,000
		8	208동 3층 2,3호	242,795	24,279	24,280	114,236	80,000
		9	208동 2층 1,4호	240,461	24,046	24,046	112,369	80,000
		11	208동 1층 1,4호	235,793	23,579	23,579	108,635	80,000
84.810	84B	2	202동 15층 2,3호	259,090	25,909	25,909	127,272	80,000
		3	202동 11~14층 2,3호 / 203동 11~13층 2,3호	256,735	25,673	25,674	125,388	80,000
		4	202동 7~10층 2,3호 / 203동 7~10층 2,3호	254,381	25,438	25,438	123,505	80,000
		5	202동 6층 2,3호 / 203동 6층 2,3호	252,026	25,202	25,203	121,621	80,000
		6	202동 5층 2,3호 / 203동 5층 2,3호	249,671	24,967	24,967	119,737	80,000
		7	202동 4층 2,3호 / 203동 4층 2,3호	247,317	24,731	24,732	117,854	80,000
		8	202동 3층 2,3호 / 203동 3층 2,3호	244,962	24,496	24,496	115,970	80,000
		9	202동 2층 2호 / 203동 2층 2,3호	242,608	24,260	24,261	114,087	80,000
		10	202동 2층 3호	240,253	24,025	24,025	112,203	80,000
		11	202동 1층 2호 / 203동 1층 2호	237,898	23,789	23,790	110,319	80,000
		12	202동 1층 3호 / 203동 1층 3호	235,544	23,554	23,554	108,436	80,000

- 위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세대별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되어 잔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융자금 상환조건은 대환일부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함.[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 변경)일 전날까지는 우리공사에서 차입한 이율에 따라 이자만 납부하고, 대환일에 입주자가 융자금을 승계하며, 대환일 이후 상환이율은 연 5.2%(변동금리)임]
- 분양가격에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 포함된 것이며 입주자가 융자금을 대환(승계)받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아래와 같이 납부하되, 세대별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해당은행과 사전협의 후 은행에서 관리하는 아래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상환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계좌에 입금된 융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대출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세대별 융자금액을 초과 또는 부족하여 입금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상환계좌 :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융자 받았으나 입주자가 대환(융자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세대별 융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납부

  [입주대상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계좌 : 301-0012-0204-91, 예금주 : 농협 가락남지점]

  ※ 만약, 세대별 융자금을 상기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또는 우리공사 계좌에 직접 납부할 경우에는 입주자 앞으로 융자 전환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상환되지 않아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금회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하는 것이며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안내' 참조]
- 각 신청자격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신청 및 입주자 선정

■ **공 통**

구분	신청 및 입주자 선정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의 동호는 일반공급 신청자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단지별 주택형에 따라 국민은행 전산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하고, 3자녀 등 특별공급 신청자는 단지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용면적에 따라 SH공사 전산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 이상을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 취소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 · 호수 추첨 후 계약 체결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이 경우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SH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함.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85㎡이하)은 1세대 1건의 청약 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또는 그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다만, 청약자 본인의 일반공급 신청일 현재까지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는 일반공급 접수가 가능하나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신청 접수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로 처리함. -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3자녀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3자녀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 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혼부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이하인 자.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금회 공급하는 전용60㎡이하 물량의 30% 이내에서 특별 공급하되,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하게 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순위별로 신청을 받되 제1순위,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의(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거주자,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단지 및 동 · 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 처리된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 100%는 3,894,700원, 120%는 4,673,640원

▶ 4인 세대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00%는 4,276,640원 120%는 5,131,960원

▶ 5인 세대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00%는 4,384,490원 120%는 5,261,380원

▶ 6인 세대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00%는 5,188,100원 120%는 6,225,720원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이라 함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순위	신청 대상자	신청접수일	접수장소	접수시간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09. 5.28(목)	SH공사 1층 (지하철 3호선 대청역 ⑧번 출구 연결)	09:30~18:00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09. 5.29(금)		
3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자			

- 자격 입증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 비치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거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 · 초본은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청약저축가입확인서 1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포함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출생, 사망 여부 포함) 1통 -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 필요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제3자(본인 및 배우자 이외) 대리 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인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추가 제출

- 소득 입증 구비 서류

구 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기관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재직증명서	해당 직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세무서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과 재직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직장
자영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세무서
	신규 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 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사업자의 직인 날인된 총급여액과 근무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 직장
무직자		• 건강(의료)보험증	신청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 **국가유공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공사로 추천한 무주택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금회 공급하는 전용85㎡이하 물량의 5% 이내에서 특별공급하되,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하게 됨.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선정 · 통보한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되, 단지 및 동 · 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처리된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접수 장소 및 일시
  - 청약자 : 서울지방보훈청이 지정하는 날짜에 해당 보훈청에 신청
  - 서울지방보훈청 : SH공사로 서류접수(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⑧번 출구). '09.5.28(목) ~ 29(금) 09:30~18:00
-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사망 여부 포함) 1통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제3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 대리 신청 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 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인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추가 제출

■ **3자녀 특별공급**

- 신청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89.5.23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입주자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량의 3% 이내에서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전용면적별 · 지역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입주자 선정 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단지 및 동 · 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처리된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의정부시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 표 및 단지별 분양대상 참조)
  -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계	서울특별시(의정부시 포함) 거주자	경기도 (의정부시 제외)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계	10	5	4	1
59㎡	4	2	2	-
84㎡	6	3	2	1

-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 수	비 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점 수	신청접수일	접수장소	접수시간
70점 이상	'09. 5. 28(목)	SH공사 1층 (지하철 3호선 대청역 ⑧번 출구와 연결)	09:30~18:00
신청자격자 전원	'09. 5. 29(금)		

-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자가 각 전용면적별 · 지역별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에는 접수받지 않음. 다만, 신청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해당 지역의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상위 점수자가 하위 점수자 신청접수 해당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음.
-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 비치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거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등 · 초본은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사망 여부 포함)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제3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 대리 신청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인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추가 제출

■ **장애인 등 특별공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서울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장애인 등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량의 10% 이내에서 특별 공급하되,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하게 됨.
  -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해당 기관별로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선정 · 통보한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되, 단지 및 동 · 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장애인 등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처리된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접수 장소 및 일시
  - 청약자 : 해당자 관련 기관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해당 기관에 신청
  - 해당기관 : SH공사로 서류접수(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⑧번 출구). '09.5.28(목) ~ 29(금) 09:30~18:00
-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사망 여부 포함) 1통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제3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 대리 신청 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 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인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추가 제출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참조]

※ 동일 순위 경쟁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2)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게 됨.

-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 순위별로 구분하여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개별 평면유형이 속한 단지의 전용면적별 '주택형'에 따라 접수하고 동호수는 청약자가 신청한 단지의 주택형 중에서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결정함.
- 순위별 접수 마감여부는 다음날 오전 8시 이전에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다만,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 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순위	신 청 자 격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 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함)

※ 전용면적85㎡ 이하 국민주택 청약 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과거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2,3순위로 청약이 불가함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 안내
◆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청약접수 받는 은행에서는 확인하지 아니함) 1. 청약저축 1순위자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봄.** ※ "동일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고, 낙첨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포함됨. ※ 우선 공급 대상자의 경우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계속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하여야 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증빙서류(☞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참조)를 SH공사에 제출하여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신청접수일시 및 장소

신청순위	거주 자격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신청접수 장소 및 시간
1순위	당해 지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노부모 부양 우선	2009.6.2(화)	-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저축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저축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수도권[인천광역시 ,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당해 지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일반	2009.6.3(수)	
	수도권 지역[인천광역시 ,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2순위	당해 지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일반	2009.6.4(목)	
	수도권 지역[인천광역시 ,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3순위	당해 지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일반	2009.6.5(금)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00~17:30
	수도권 지역[인천광역시 ,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능자에 한하여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함. 다만,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3자녀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함.
- 일반공급의 경우 각 순위자는 해당 순위 신청 접수일에만 당해 청약순위 자격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의 15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청약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능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접수 09:00~16:00)

- 은행창구 방문 신청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 신청서 (노부모부양우선공급 및 1,2순위자 : 청약저축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저축 통장(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및 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및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서명 - 청약 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배우자 포함)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위임장 1통(위임장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은 생략 가능)

- 입주자 선정 방법
  -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별 일반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및 일반공급 제1,2순위자 중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순위 안에서는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에 관계없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가 우선함. 이 방식은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③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3순위 청약**

- 3순위 청약 신청금 : 전주택형 1,0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2009.6.12) 다음영업일 이후 평일 09:00~16:00(다만, 토 · 공휴일 제외)
2.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3.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4. 제3자 대리 환불 시 추가 구비 사항 : 상기 환불 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주민등록증
5.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7.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다음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전용85㎡ 초과(민영) 주택

2단지 공급내역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상계장암지구 내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7~15개층 7개동 분양아파트 298세대 중 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평면유형	동호배치도	건축개요서	세대별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계	3자녀특별공급	일반공급	해당동	해당평면 최고층수	입주기한
22150-01	2009000267 (01)	114.690	114	101A	101A	114.690	29.280	143.970	54.500	(49.700)	198.470	86.540	81	2	79	205, 206, 207	10	'09.11월

■ 분양가격 (단위 : 천원)

주택형	평면유형	구분(군)	공급대상(층)	주택가격	입주금 납부방법 계약금(계약시)	중도금(2009.8.15)	잔금(입주시)
114.690	114	3	205동7층~10층 1,2호, 7층 3호 / 206동 7층~10층 1,2호 7층 3호 207동 7층~10층 1,2호, 7층 3,4호	370,537	37,053	37,054	296,430
		4	205동 6층 1,2,3호, 7층 4호 / 206동 6층 1,2,3호, 7층 4호 207동 6층 1,2,3,4호	366,948	36,694	36,695	293,559
		5	205동 5층 1,2,3호, 6층 4호 / 206동 5층 1,2,3호, 6층 4호 207동 5층 1,2,3,4호	363,358	36,335	36,336	290,687
		6	205동 4층 1,2,3호, 5층 4호 / 206동 4층 1,2,3호, 5층 4호 207동 4층 1,2,3,4호	359,769	35,976	35,977	287,816
		7	205동 3층 1,2,3호, 4층 4호 / 206동 3층 1,2,3호, 4층 4호 207동 3층 2,3호	356,180	35,618	35,618	284,944
		8	205동 2층 2호 / 206동 2층 2호 / 207동 3층 1,4호	352,589	35,258	35,259	282,072
		9	205동 2층 1호 / 206동 2층 1호 / 207동 2층 3호	349,000	34,900	34,900	279,200
		10	205동 1층 2호 / 207동 2층 2호	345,411	34,541	34,541	276,329
		11	205동 2층 3호, 3층 4호 / 206동 1층 2호, 2층 3호, 3층 4호	341,821	34,182	34,182	273,457
		13	205동 1층 3호 / 206동 1층 3호	334,642	33,464	33,464	267,714

• 각 신청자격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각 평면유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신청 및 입주자 선정

■ 공통

구 분	신청 및 입주자 선정
특별 및 일반공급	- 일반공급은 입주자선정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의 동호는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에 따라 국민은행 전산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하고,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단지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용면적에 따라 SH공사 전산 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 이상을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 · 호수 추첨 후 계약 체결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이 경우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SH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3자녀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3자녀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세대주 및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등 · 초본(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무주택기간은 재산검색 결과에 의하여 확인함.

■ 3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만20세 미만('89.5.23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의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 우리공사(1층)에서 직접 접수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방법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금회 공급량의 3% 이내에서 배정된 주택형의 물량에 한하여 공급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금회 공급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전용면적별 · 지역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에 의한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단지 및 동 · 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 처리된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의정부시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표 및 단지별 분양대상 참조)
-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 구분	계	서울특별시(의정부시 포함) 거주자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114㎡	2	1	1	-

•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 수	비 고
계		100			
① 자녀수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② 세대구성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③ 무주택 기 간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④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①,②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③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④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청접수일시 및 장소

점 수	신청접수일	접수장소	접수시간
70점 이상	09. 5. 28(목)	SH공사 1층 (지하철 3호선 대청역 ⑧번 출구와 연결)	09:30~18:00
신청자격자 전원	09. 5. 29(금)		

-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자가 각 전용면적별 · 지역별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에는 접수받지 않음. 다만, 신청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해당 지역의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상위 점수자가 하위 점수자 신청접수 해당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음.
• 구비 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신청서(접수 장소 비치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주기간 또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등 · 초본은 구청, 동사무소 등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이 모두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사망 여부 포함)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 제3자(본인 및 배우자 이외)대리 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청약 위임용)1통,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 인장,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추가 제출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해당 공급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가입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접수 전에 예치하고 청약 가능함.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소지 변경 없이 해당 주소지역 청약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 없이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 시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가 청약가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게 됨.
• 금회 일반공급 물량 중 50%는 가점제,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함. 다만, 공급세대가 홀수인 경우에는 가점제 물량에 절상하여 세대수를 배정하고 당첨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 순위별로 구분하여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개별 평면유형이 속한 단지의 전용면적별 '주택형' 에 따라 접수하고 동호수는 청약자가 신청한 주택형 중에서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결정함.
• 순위별 접수 마감여부는 다음날 오전 8시 이전에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다만,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순위	순 위 요 건
민영주택	1순위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자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하여야 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시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에 대하여 감점이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한 경우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청약예금에 가입한 1순위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 가능)**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참조
	2순위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단위 : 만원)

전용면적 \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14㎡	1,000	700	400

• 청약통장 면적변경 및 청약 신청 요건
- 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을 지역별 전용면적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면적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 변경한 자의 청약 신청 요건
·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청약 신청 가능.
·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청약 신청일 현재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청약신청 가능. (다만,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 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다만, 2007.9.1 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을 말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 청약 가점제 적용 세부 기준
가. 일반 기준
1)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2)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
나. 가점 산정 기준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 점 구 분	점수	가 점 구 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비 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3항, 제12조 제3항 · 제5항 · 제7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 대상에 포함됨. 가점항목의 부양가족수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를 기재하여야 함.
다. 감점 산정 기준

구 분	감 점 항 목 기 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신청순위	거주 자격	신청접수일	신청접수 장소 및 시간
1순위	당해 지역 (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	2009.6.3(수)	- 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예금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청약예금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수도권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2순위	당해 지역(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	2009.6.4(목)	
	수도권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3순위	당해 지역 (서울특별시 및 의정부시)	2009.6.5(금)	- 접수장소 : 국민은행 • 인터넷 :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00~17:30
	수도권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제외)]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능자에 한하여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함.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은 SH공사 1층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함.
• 일반공급 각 순위자는 해당 순위 신청 접수일에만 당해 청약순위 자격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15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무주택세대주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청약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능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 09:00~16:00)
• 은행창구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 시	- 주택공급 신청서(1,2순위자 : 청약예금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국민은행 본 · 지점에 비치) - 청약예금 통장(1,2순위에 한함) - 청약예금통장 인장(1,2 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서명 - 청약 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지참)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제3자 대리 신청 시	- 본인(배우자 포함)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위임장 1통 (위임장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청약자 본인의 신분증 제출은 생략 가능,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지참)

■ 3순위 청약

• 3순위 청약 신청금 : 전주택형 1,000만원
-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1.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2009.6.12) 다음영업일 이후 평일 09:00~16:00(다만, 토 · 공휴일 제외)
2.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3.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4. 제3자 대리 환불 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 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다만,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5.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6.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7.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다음 영업일 자동이체됨.

당첨자 발표

발표일 및 발표장소	당첨자 조회방법	비 고
■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3자녀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 - 일시 : 2009.6.2(화) (17:00) - 장소 : SH공사 홈페이지 및 분양팀 게시판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우측 '당첨자 조회'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하지 않음.**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일시 : 2009.6.12(금) - 장소 : • SH공사 홈페이지 및 분양팀 게시판 • 헤럴드경제신문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신문 게재 제외)		

○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당첨확인▶주택별 조회	·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청약센터▶당첨자 조회
	이용기간	· 2009.6.12 ~ 2009.6.21 (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 2009.6.12 ~ 2009.6.21 (10일간)	· 2009.6.12 ~ 2009.6.21 (10일간)
휴대전화문자 서비스	대상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 2009.6.12 (08:3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상자	계약체결기간 (토 · 공휴일 제외)	계약시간	계약장소
상계장암지구1,2단지 당첨자 전원	2009.6.29(월) ~ 2009.7.1(수)	09:30~17:00	SH공사 1층 분양팀(지하철 3호선 대청역 하차 ⑧번 출구와 연결, SH공사빌딩 1층)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된 후에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방문시 반드시 과거 당첨 사실(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주택소유 현황(공사 홈페이지)을 조회 · 확인 후 청약 내용을 비교 ·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다만, 신청 시에 배우자가 누락되었거나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는 계약 후 추가로 과거 당첨사실 및 재산검색을 실시하여 소명토록 함.

■ 계약 시 구비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자산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함.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아파트 계약용" 이라고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 서명 공증서로, 신분증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당첨자 선정 및 아파트 동 · 호 추첨 후 계약체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계약금 고지서는 계약 장소에서 적격자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발급 받아 납부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약금(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만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을 취소함.

구 분	계약 시 구비 서류
공 통	• 계약금 납부영수증 원본 [계약금 고지서는 계약 장소에서 직접 수령 후 지정은행(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에 납부] •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택공급 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다만,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제출 생략)
해당자 구비서류	•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 이상인 자 : 세대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등 · 초본은 구청, 동사무소 등의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 이 모두 포함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청약자(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포함) 1통 • 단독세대주 및 미혼(이혼)자 :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포함) 1통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신청자인 경우 :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청약저축가입확인서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확인서 1통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가 신청자인 경우 : 장애인 수첩사본 1부 및 청약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청약저축 가입확인서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확인서 1통 • 재외동포 :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만30세 전에 혼인한 자 중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자 : 혼인관계증명서 1통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당첨자	• 청약자 및 피부양 직계존속(65세 이상 노부모)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 및 세대주 표시) • 피부양 직계존속(65세 이상 노부모)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피부양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 미등기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 무허가건물확인서 - 기타 무주택입증서류 - 소형저가주택 증명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3자 대리 계약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당첨자의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장

■ 계약 조건 등

◆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1~3순위 및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 명단을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저축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첨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가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무주택세대주 기간이 사실과 다를 경우
- 국민주택(전용85㎡이하) 신청자의 경우 입주 시까지의 기간 중에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특별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1회 당첨된 자로 판명될 경우
-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판명될 경우
- 청약 가점항목(무주택기간, 주택소유 현황, 부양가족수 등) 기재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민영주택에 한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국민주택 및 특별분양 당첨자에 한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을 포함하며, "당첨자"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를 참고하고, 신청 전에 과거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신청 · 계약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입주자저축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주택공급을 신청 · 계약한 경우
- 서류결격 또는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택소유 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통보 내용(공사 홈페이지 '상계장암 일반분양 당첨자 주택소유 현황 조회' 란에 2009.6.24 18:00 게시)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소명기간(통보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아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1.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기준
2.미등기주택의 경우 :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기준)
3.기타 무주택입증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잔금 완납,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 주택공급신청서상의『주택형』또는『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의『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의 동호는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므로 청약인이 주택의 방향, 평면 배치 등 아파트 배치구조와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또는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마감재 등은 단지별, 평면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마감 수준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명칭 및 동별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의 내용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도시개발사업구역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 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 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중도금, 잔금 납부 및 선납할인 안내

■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금은 납부기한(잔금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연6%(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드리고,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1개월 미만 연11%,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 6개월 이상 13%의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및 잔금 고지서는 납부기한일 전에 분양계약서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주소변경 및 배달 착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가 납부기한 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SH공사 분양팀에 확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발급 및 납부하여 연체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금고지서 발급 방법 : 홈페이지(www.i-sh.co.kr)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측 "납부금 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아파트 분양금 조회 → 납부내역에서 중도금 등 확인 후 고지서 재발행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름.
◆ **사업부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청약 전에 단지 및 주변 여건에 대하여 확인을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이 주택의 입주 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평면도의 각 실별 치수는 시공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각 실별 치수에는 천정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치수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가구배치 계획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계장암지구 토지이용계획도상 1단지 남측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용지는 다른 용도로 계획 변경을 검토 중임.
◆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입주민 자녀는 서울누원초등학교에 전 · 입학이 가능함. 다만,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1,2단지 입주민 자녀분 중 입주일 현재 취학대상자 또는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서울누원초등학교로 전 · 입학이 **가능하지만, 입주일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과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은 의정부시 관내 학교로 전 · 입학하여야 함.**
◆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시공사는 (주)신일건업, 3,4단지 시공사는 한신공영(주)임.
◆ 상계장암지구 1단지 공동주택 용적율은 169.56%이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로서 분양주택은 103,104,109,111동임.
◆ 상계장암지구 2단지 공동주택 용적율은 167.99%이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로서 분양주택은 202,203,205~208,210동이며 208동 옆쪽으로 농구장이 위치해 있음.
◆ 상계장암지구 3단지 공동주택 용적율은 185.82%이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로서 분양주택은 301,302,303,305,306,308,309동이며 그 중 303,308,309동은 어린이공원과 인접하고 있고 306동과 307동 사이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해 있어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상계장암지구 4단지 공동주택 용적율은 190.7%이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로서 분양주택은 402,403,404,406,407동임.
◆ 2단지 205동, 206동 필로티 하부로 단지 내 차량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통행으로 소음과 진동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며, 야간차량 통행 시 자동차 전조등으로 생활이 불편할 수 있음.
◆ 2단지 210동, 4단지 403동 후면 발코니쪽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208동,210동,402동,403동,404동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아파트 발코니 전면 및 후면에 지하주차장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위한 시설이 위치해 있어 소음, 냄새, 조망권 등의 방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상계장암지구 내 각 단지 일부 아파트 동의 형태가 ㄱ,ㄴ,ㄷ자 형으로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이웃 간에 실내 내부가 투시될 수 있음.
◆ 상계장암지구 경계지역 등에 비닐하우스 등 영농을 하고 있어 퇴비 등으로 인한 냄새가 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램프와 근접한 세대는 소음과 야간에 자동차 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인 단지(1,3,4단지)는 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상계장암지구 동쪽으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사 훈련 등으로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계장암지구 남측 및 동측으로 동1로와 동부순환로, 서측으로 도봉로, 북측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음.
◆ 진출입로인 마들길이 중랑천을 따라 상계장암지구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산 퇴계원간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북측에 인접하고 있음.
◆ 상계장암지구 3,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서 3,4단지 경계에 계획된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도육교(백운육교)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상계장암지구 서측 중랑천변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2010년말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1단지 좌측 공공도로가 일정기간 폐쇄될 수 있으며 공사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및 교통 체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도로가 개설될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계장암지구는 지역난방방식으로 세대에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 및 수목식재 등으로 이삿짐 운반을 위한 고가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많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신 후 이삿짐을 운반하시고 되도록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근린공원 내 조성되는 건천은 우기 시에만 물이 흐르는 형태로 조성됨.
◆ 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공원 · 녹지시설은 주변 공사 상황에 따라 사용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1,2,3층 및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샷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 ·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으로서 내부 시설물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본 아파트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동등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시공회사별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되며, 타입별로 색상과 형태가 다소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벽체, 대피소 위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SH공사 및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결로 등의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 및 계약장소 등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SH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입주 시까지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SH공사에서는 입주하신 후에 불편하지 않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서도 보실 수 있음.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검색대상자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보며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 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 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등

단 지 명	시공업체	감리 현황 감리회사	감리금액(천원:VAT포함)
1, 2단지	(주)신일건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2,658,049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개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으로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 등 주요 항목별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금액단위 : 천원, ( )공급면적 ㎡당 금액]

구 분	분양가 공개 항목 합 계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1단지	55,366,759 (2,342)	27,648,296 (1,169)	24,030,664 (1,016)	484,910 (21)	545,544 (23)	610,116 (26)	400,603 (17)	1,646,626 (70)
2단지	76,913,568 (2,408)	38,263,254 (1,198)	33,704,228 (1,055)	680,110 (21)	765,154 (24)	855,718 (27)	561,866 (18)	2,083,238 (65)
합 계	132,280,327 (2,380)	65,911,550 (1,186)	57,734,892 (1,039)	1,165,020 (21)	1,310,698 (24)	1,465,834 (26)	962,469 (17)	3,729,864 (67)

◆ 가산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건축비 가산 비용 초과복리시설	기간이자
1단지	1,646,626 (70)	266,217 (11)	1,380,409 (59)
2단지	2,083,238 (65)	142,798 (4)	1,940,440 (61)
합 계	3,729,864 (67)	409,015 (7)	3,320,849 (60)

◆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액

구 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총액[천원]
1단지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27,648,356
2단지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38,263,404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견본주택 운영

■ 개관일시
○ 사이버모델하우스 : 2009.5.7(목)부터 운영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우측 '사이버모델하우스' 선택]
○ 견본주택 공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대상) : 2009. 6. 13(토)~15(월) 10:00~17:00
- 59㎡(B형) : 1단지 11동 204호, 84㎡(B형) : 1단지 111동 203호, 114 ㎡ : 2단지 207동 202호
※ 견본주택 방문 시 현장 안내문에 정해진 코스대로 이동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안전사고 등을 감안하여 절대 출입 불가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SH공사 및 건설현장에서 책임지지 않음.
※ 견본주택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 견본주택 및 주택전시관 방문 시 현장 혼잡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교통편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①번 출구(도보20분, 버스5분), 1호선과 7호선 도봉산역 ②번 출구(도보15~20분)

SH공사 약도(방문신청 및 계약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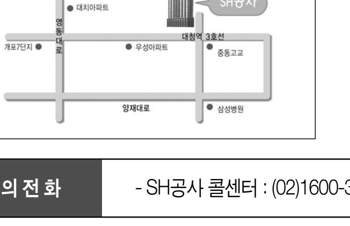

상계장암지구 현장 약도

문 의 전 화	- SH공사 콜센터 : (02)1600-3456	분양팀 팩스 : (02)3410-750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009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www.i-sh.co.kr

"철거(예정)가옥" 의 입주권 매매를 통해 우면,세곡,강일2,은평지구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중개 · 알선하는 경우가 있으나,「입주권」은 "철거(예정)가옥" 소재지 관할구청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 가옥(속칭, 물딱지)을 매입하게 될 경우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신규 입주 주택의 계약체결 전에 입주권을 매입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